

폐기물처분업체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기준 법률집

2013. 05.



한국 산업 폐 자원 공 제 조 합

Korea Industrial Waste-Resources Mutual-aid Association

목 차

| | |
|---------------------------------------|----|
| I . 폐기물처분업체의 지도·점검 주요사항 | 1 |
|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 | 3 |
| 2.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 | 5 |
| 3.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사항 | 6 |
| 4.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사항 | 7 |
| 5.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 | 9 |
| 6.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사항 | 11 |
| 7. 폐수처리업체 지도·점검 사항 | 12 |
| 8.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실태 지도·점검 사항 | 13 |
| II .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주요내용 | 15 |
| 1.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17 |
| 2. 폐기물처분시설의 관리기준 | 21 |
| 3. 행정처분기준 | 29 |
| 4.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 34 |
| 5. 과태료의 부과기준 | 35 |

I

폐기물처분업체의 지도·점검 주요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

가. 공통 사항

- 1)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사항과의 일치 여부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고장방치 등)
- 3) 오염물질 누출여부
- 4)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 여부
- 5)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 6) 자가측정이행 여부
- 7) 행정처분 이행상태

나. 대기분야 주요 점검내용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확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방지시설별 배출시설과 사업장 현장에 설치 가동중인 배출시설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 확인

2) 방지시설별 가동실태 조사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에 환풍기가 설치(별도의 환풍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흡입 처리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 임)되어 있는 경우

- 오염물질 포집장치, 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덕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방지시설 몸체 등의 훼손 여부
-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상에 기록되어 있는 방지시설의 용량과 자가측정 기록지에 명시된 풍량과의 비교·확인

3) 방지시설별 운영실적 확인

- 여과집진시설의 경우 여과포 교환 실적(세금계산서 등 확인)
- 흡착에 의한 시설의 경우 용제류 사용량, 단위방지시설에 충전되는 활성탄의 양, 오염물질 흡착계수 등을 고려한 활성탄 교환 실적(세금계산서 등 확인)
- 활성탄 교환일자로 부터 일정기간 경과 한 경우에는 활성탄의 다공이 막혀 풍량이 현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풍량이 정상으로 배출되면 챔버 내의 by-pass 설치유무 확인 필요
- 세정식 집진시설의 경우 고정식 세정수 공급시설 설치여부 및 공급량, 고정식 폐수 배관(자체폐수처리장 운영시) 또는 폐수(위탁처리시) 저장시설 설치여부 및 폐세정수 처리 실적 등
- 방지시설별 분진처리실적(분진회수 상태, 분진 유출 여부 등 확인) 및 전기 사용량
- 방지시설별 초기 압력손실의 값(마노미터 등)을 기준으로 압력손실의 변화 상태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4)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여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

5)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류상의 설계도면(사양)과 설치사항과 부합여부 확인

- 방지시설의 규격, 송풍기 동력, 후드규격, 오염원과의 이격거리, 오염물질 포집 방법 등

6) 밀폐공정의 경우 밀폐상태 유지여부(외부공기 유입 또는 누수여부 확인 등)

7) 세정수 살수 펌프 가동 여부

8) 방지시설운영일지에 기록된 압력손실, 풍량, 온도 등 인자들의 비례 값을 확인

다. 수질분야 주요 점검내용

1) 무허가(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확인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배출시설과 사업장 현장에 설치 가동 중인 배출시설과의 비교하여 일치여부 확인

2)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 실태 확인

- 일정기간중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폐수처리량(위탁처리량 등)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폐수처리량의 적정여부 확인
- 폐수처리약품 사용량, 슬러지 처리량(함수율 고려) 및 보관량을 확인하여 가동 실태를 파악
- 배출원부터 방지시설까지 폐수배출경로를 확인하여 비밀배출구 유무를 확인
 - 필요시 색소 또는 가벼운 입자상 물질을 투입하여 유로를 확인
- 동종업체의 단위 제품생산량 대비 폐수 발생량, 슬러지 발생량 등의 주요인자 값을 비교
- 슬러지 처리량이 적법하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최종처리 되었는지 확인
- 일정기간 방지시설운영일지에 기록된 폐수처리량, 약품사용량, SVI, F/M 비율, 슬러지 반송률, 반응시설의 체류시간 등을 상호 비교하여 비례 값을 확인
- 공정상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오염물질을 희석처리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사용여부를 확인(간접냉각수를 폐수처리장에 공급여부 등)

2.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

| 점검사항 | 주요착안사항 |
|--------------------------|--|
| 가.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자신고여부(배출자신고서 확인)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도, 사용원료,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으로 확인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 처리계획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여부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여부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여부 |
| 나.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여부(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 시설에 한함)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자는 제때 입력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 |
| 다.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지정폐기물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관계서류 확인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 기재 여부 등) |
| 라.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 이행여부 |
| 마.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립대상폐기물 종류의 적합여부 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침출수의 처리시설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매립표지판 설치여부 옹벽·제방 등 구조물의 적정관리여부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 등 이행여부 |
| 바.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관시설의 적정여부(옥외보관 승인여부 등 시행규칙 별표5 적합여부)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비산·유출·지하침투·악취등 방지여부 보관기간 준수여부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여부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침출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
| 사.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운반차량증 발급 또는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여부, 운반 방법의 적정성 등 확인) |
| 아.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실시여부 |

3.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사항

| 점검사항 | 주요착안사항 |
|-----------------------|--|
| 가.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업 허가증 비치여부 ◦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수집·운반)방법 - 처리(수집·운반)대상 폐기물 - 처리시설소재지·사업장명 등 ◦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
| 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초과보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비중은 해당 사업장의 제시값을 적용하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시험분석 실시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측량실시 ◦ 처리이행보증 적정여부(허용보관량 대비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등 확인) |
| 다. 폐기물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적정 입력 여부 |
| 라. 폐기물 적법처리여부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받은 폐기물이 처리시설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차량운행일지 및 관리대장 확인) ◦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여부 ◦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여부 ◦ 처리 및 재활용(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 ◦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여부(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 |
| 마.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 관리여부 |
| 바.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시행규칙 별표5) ◦ 폐기물종류별 구획보관 여부 ◦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여부 ◦ 침출수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
| 사.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방법, 용기, 운반차량 등을 확인 ◦ 운반차량의 적정성 여부(차량증 발급 여부, 바닥의 밀폐, 덮개비치, 처리업체명 기재여부 등) ◦ 차량운행일지 확인 ◦ 폐기물인계서 확인 |
| 아.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 ◦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준수 여부 ◦ 각종 대장 적정작성 및 보관여부 ◦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함) ◦ 기타 관련 법규정 준수여부 |

4.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사항

| 구 분 | 점검사항 | 주요 확인 사항 |
|-----------------|------------|---|
| 가.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 배출시설 허가·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증 확인 |
| | 입의 증진설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
| 나. 배출시설운영 관리 | 제조공정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
| | 정상운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바이패스 닥트)의 설치여부 |
| | 보일러, 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 등) 사용 여부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저황유 사용여부) 연소물질(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확인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
| 다. 방지시설 | 설치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 |
| | 정상운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적산전력계등) 부대기계, 기구류(계량기, 각종 모타등)의 제 성능 발휘 여부 확인 방지시설의 임의교체여부 확인 |
| | 정상운영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품 투입 및 교체(여과물 교체등) 확인 가동 및 고장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 일지 등 관계 서류 확인 공동방지시설에 허가 배출시설이외의 시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 적산전력계 설치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 |
| | 오염물질 배출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확인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확인 2차 시료채취 및 오염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되는 오염물질 주요항목 측정 총 배출구수/시료채취배출구 기재 |

| 구 분 | 점검사항 | 주 요 확 인 사 항 |
|----------------------------|------------------------|--|
| 라. 자가측정 상태 | 자가측정 이행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측정 실시여부(배출구별 이행횟수 등) ◦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측정여부 확인 |
| | 자가측정 정도관리 (해당 사업장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장비 확보 여부 ◦ 표준가스등을 이용한 측정오차관리실태 확인 ◦ 시약 사용실적과 측정횟수등의 비교 검토 확인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여부 확인 ◦ 측정장비의 공공기관 성능검사 실시여부 확인 |
| | 측정결과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
| 마. 굴뚝 자동 측정 기기 부착·운영 관리 상태 | 부착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착시기 이전에 부착, 관제센터에 전송여부 |
| |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되는지 여부 ◦ 신규시설로 1년간 설치유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굴뚝구조상 부착이 불가능한 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예비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
| | 운영·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표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된 측정기기를 7일 이상 방치했는지 여부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하는 경우 ◦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 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관리를 받았는지 여부 ◦ 굴뚝자동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는지 여부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동 명령의 위반 여부 |
| 바.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 | 정상근무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별 자격기준 확인 ◦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인사기록, 출근부, 급여지급 등 관계 서류 확인) |
| 사. 신고 및 행정 처분 | 신고 및 행정 처분 이행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5.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

| 구 분 | 점검사항 | 주 요 확 인 사 항 |
|----------------|---|--|
| 가. 배출시설 신고 사항 | 배출시설신고 | ◦ 배출시설 신고증 확인 |
| | 입의 증·신설 여부 | ◦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
| 나. 배출시설 운영 관리 | 제조공정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설치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사용물질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
| 다.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 제조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식 밸프, 배관 - 누출여부육안확인 및 뚜껑, 브라인트 프렌지, 마개, 이중 밸브 설치유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기 및 검사용시료채취장치 - 카스켓 등 봉인장치 및 밀폐배출관로설치 여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집수조 및 하수구 - 덮개 및 환기배관설치여부 및 훼손여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배기장치 및 VOC방지시설 설치 여부 |
| | 저장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부상형지붕 - 부유지붕의 상단가장자리에 밀폐장치설치(폼 밀봉, 유체충진형, 이중밀봉장치, 지렛대 구조밀봉장치) - 자동환기구, 림환기구의 경우 가스켓장착여부(이외 개구부의 상부덮개설치 및 개구부 하부의 액체속 잠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부상형지붕 - 폰툰식 및 이중갑문식 덮개 설치여부 - 자동환기구의 가스켓설치여부(이외의 개구부의 덮개설치 및 개구부 하부의 액체속 잠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형지붕 - VOC방지시설의 설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의 저장시설 - 유류적하시 회수설비설치 및 탱크내 가지관 숨구멍밸브의 배출최소화 조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용제·페인트 제조업 저장시설 - 밀폐구조 및 환기구배출물질의 방지시설처리여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적하가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 시설에 대한 제품 출하 여부 |
| 출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시 회수된 VOC의 재이용 및 소각 등 적정처리 여부 - 소각시설의 처리효율 95%이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배기장치 및 VOC 방지시설 설치 여부 | |

| 구 분 | 점검사항 | 주 요 확 인 사 항 |
|---|------------|---|
| 다.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 주유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여부(처리효율 90% 이상) - 개별식(스탠드형, 천장형), 집중식 회수시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 실시여부 -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 유증기 회수설비 회수율 및 회수배관 압력 감쇄·누설 검사 실시여부 - 회수율 적정범위(0.88~1.2), 검사주기 및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
| | 세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클로로에틸렌, 크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사용시설 - 밀폐형 구조 설치여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벤트 등 그 밖의 유기용제 사용시설 - VOC의 외부 배출억제 조치여부 |
| | 세정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용제 사용시설의 밀폐구조확인,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유무 |
| | 도장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도장 - 페인트사용량 최소화하는 작업방법 등 개선조치 수립·시행여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외의 도장시설(건조, 혼합시설포함) -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설치유무 |
| | 폐기물보관·처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시설 - 밀폐구조, 방지시설 설치확인 및 충전시 VOC물질 회수설비 설치유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쇄·분쇄·절단시설 - 밀폐구조 및 이와동등한 시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 고온열분해, 건류시설 -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융, 증발, 농축, 반응, 정제, 유수분리시설, 응집·침전 시설 - 시설의 밀폐구조 환기구를 통한 VOC물질 처리위한 방지시설 설치 | | |

6.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사항

| 구 분 | 점검사항 | 주 요 확 인 사 항 |
|-------------------------|-------------------------------|---|
| 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사항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유무 | ◦ 허가(신고)증 확인 |
| |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 조업 유무(임의증설, 신설) | ◦ 허가내용과 실제 설치 시설의 확인 비교 |
| | 가동개시 신고여부 | ◦ 가동개시후의 조업여부 |
| 나. 방지사설 (폐수처리 시설 운영 현황) | 방지사설 정상가동 여부 (점검시만 가동 여부) | ◦ 현장확인 ◦ 약품소모량, 전력사용량 및 기타 관계장부 등 비교검토 |
| |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 ◦ 현장확인 ◦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
| | 방지사설 고장방치(기기 고장 등) 여부 | ◦ 현장확인 ◦ 운영기록부 확인 |
| | 방지사설 가동 기록 유지 여부 | ◦ 기록부 확인 |
| |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 ◦ 시료채취 및 수질조사(시료채취 확인서 징구) |
| 다.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 | 환경기술인 정상근무 확인 | ◦ 종별구분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격 적정여부 ◦ 채용관계등 인사기록, 출근부, 봉급명세서 등 확인 |
| 라. 행정명령 이행 사항 | 행정처분 이행 여부 | ◦ 근간의 행정처분 관계 서류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
| |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유무 | ◦ 설치유무, 적정기기 유무 및 정상가동유무 등 확인 |

7. 폐수처리업체 지도·점검 사항

| 점검사항 | 주요 확인 사항 |
|---------|--|
| 가. 기술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기술자격증, 출근부,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
| 나. 실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안에 구획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바닥,벽면의 자재의 적정 여부 ◦ 급수수도전,세척시설,배수시설 설치 여부 ◦ 환기장치 설치 여부 ◦ 항시 실험가능토록 관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장비 및 초자기구 구비 적정 여부 - 시약 구비 확보 적정 여부 |
| 다. 방지사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화학적 방지사설 정상가동 여부 |
| 라. 운반장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장비 탱크로리(2㎡ 이상), 합성수지제 용기(1㎡ 이상), 고정된 차량, 합성수지제 용기(20L 이상) 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 부착 여부 ◦ 내부용량의 계측 구조 구비 여부(공차중량 표시포함) ◦ 차량색상 및 표시사항 적합 여부 ◦ 보호구(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보호안경), 중화제, 소화기 등 비치 여부 등 |
| 마. 저장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시설의 적합여부(처리시설능력의 2배이상) ◦ 폐수성상별 구분저장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부착 여부 ◦ 부식되지 아니한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 유입폐수와 보관폐수 계측 구조 구비 여부 ◦ 작업시 안전고려한 덮개·가스 배출구 및 폐수처리장 이송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 부착 여부 ◦ 폐수처리후 발생 폐기물(오니류)보관소 주변 토양오염방지 및 우수혼입방지 구조여부 등 |
| 바. 처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인정시설 설치여부 ◦ 처리시설의 능력(60㎡/일 이상) 적합여부 ◦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방독면, 보호장갑, 보호 신발, 보호의, 보호안경) 및 소화기 비치여부 ◦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 설치 부착 및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설치 여부 등 |
| 사. 준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수탁여부 ◦ 위수탁처리기록 유지 및 3년간 보관여부 ◦ 위수탁서류 허위발급 여부 ◦ 수탁폐수 보관기일(10일) 적정이행 여부 ◦ 기타 등록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 아. 행정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이행여부 |

8.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실태 지도·점검 사항

| 점검사항 | 주요착안사항 |
|-----------------------------|--|
| 가. 사후관리요원 전담배치여부 | ◦ 침출수처리시설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전담배치여부 |
| 나. 최종복토의 적정성 여부 | ◦ 사후관리계획서에 제시된대로 적정하게 최종복토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
| 다. 우수배제시설의 적정성 여부 | ◦ 우수배제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 붕괴 등으로 인한 우수유입여부 ◦ 유량조정조 설치관리 상태 확인 |
| 라.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 ◦ 침출수 및 처리수 조사의 적정여부(조사주기, 조사항목, 처리결과 등 확인) |
| 마. 지하수 수질 조사에 관한 사항 | ◦ 매립시설 설치초기에 설치된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여부 ◦ 지하수 수질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의 적정성 여부 |
| 바. 주변해역 수질조사에 관한 사항 |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의 적정성 여부 |
| 사. 발생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 | ◦ 가스회수 및 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 발생가스 성분조사 실시여부 ◦ 조사주기 및 처리의 적정여부 |
| 아.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에 관한 사항 | ◦ 구조물 및 지반에 대한 안정도 검사여부등 ◦ 표고의 변화 측정 및 지면의 경사도 유지에 대한 검사여부 ◦ 지반침하 발생여부 |
| 자. 주변환경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 ◦ 매립지 주변의 수질, 토양, 대기 등의 오염도조사 방법의 적정여부 |
| 차. 방역에 관한 사항 | ◦ 적정방역 실시여부 |
| 카. 기 타 | ◦ 매립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 경계선 등의 적정설치, 유지관리 여부 ◦ 기타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등 |

Ⅱ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주요내용

1.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가. 공통기준

-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3)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8)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가)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 2)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 2)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4)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6)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2 제31호의2나목2)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7) 별표 5의2 제31호의2다목에 따라 폐유, 할로젠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3)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8)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정제유기용제·재생연료유·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9) ~ 12) (생략)

- 13)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가. 공통기준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4)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9 제1호가목 3) 단서 또는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붙여진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운전내용자동기록지 등의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보수·정전·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매체에 기록·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정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과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8) 매립시설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대상 폐기물 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 11) (생략)

나. 개별기준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소각시설

(1) 공통기준

(가)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섭씨 6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삭제 <2008.1.28>

(라)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 (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사)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아)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을 연소실·열분해실·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하여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 <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3>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이 시작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나) 고온소각시설

- <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3>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

<1> ~ <3> (생략)

(라) 고온용융시설

<1> ~ <3> (생략)

가) 기계적 처분시설 ~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생략)

2)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가) 차단형 매립시설

1) 매립시설의 측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한다.

4)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형 매립시설

1)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 구 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 화학적산소요구량(mg/L) | | | 부유물질량 (mg/L) |
|------|--------------------|--------------------------|--------------------------------------|----------------|--------------|
| | |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 |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 |
| | | 1일 배출량 m ³ 이상 | 침출수 2,000배출량 2,000 m ³ 미만 | | |
| 청정지역 | 30 | 50 | 50 | 400(90%) | 30 |
| 가 지역 | 50 | 80 | 100 | 600(85%) | 50 |
| 나 지역 | 70 | 100 | 150 | 800(80%) | 70 |

비 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原水)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mg/L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항목 지역 | 수소 이온 농도 | 노말핵산추출 물 질 함 유 량 | | 페놀류 함유량 (mg/L) | 시 안 함유량 (mg/L) | 크 롬 함유량 (mg/L) | 용해성 철 함유량 (mg/L) | 아 연 함유량 (mg/L) | 구 리 함유량 (mg/L) | 카드뮴 함유량 (mg/L) | 수 은 함유량 (mg/L) | 유기인 함유량 (mg/L) |
|----------|-----------------|---------------------|----------------------|----------------------|----------------------|----------------------|---------------------------|----------------------|----------------------|----------------------|----------------------|----------------------|
| | | 광유류 (mg/L) | 동식물 유지류 (mg/L) | | | | | | | | | |
| 청정 지역 | 5.8 ~ 8.0 | 1 이하 | 5 이하 | 1 이하 | 0.2 이하 | 0.5 이하 | 2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0.02 이하 | 불검출 | 0.2 이하 |
| 가 지역 | 5.8 ~ 8.0 | 5 이하 | 30 이하 | 3 이하 | 1 이하 | 2 이하 | 10 이하 | 5 이하 | 3 이하 | 0.1 이하 | 0.005 이하 | 1 이하 |
| 나 지역 | 5.8 ~ 8.0 | 5 이하 | 30 이하 | 3 이하 | 1 이하 | 2 이하 | 10 이하 | 5 이하 | 3 이하 | 0.1 이하 | 0.005 이하 | 1 이하 |

| 비 소 함유량 (mg/L) | 납 함유량 (mg/L) | 6 가 크 롬 함유량 (mg/L) | 용해성 망 간 함유량 (mg/L) | 불 소 함유량 (mg/L) | PCB 함유량 (mg/L) | 총대장 균군 수 (군수/ mL) | 색도 (도) | 암모니아 성 질 소 (mg/L) | 무기성 질 소 (mg/L) | 총 인 (mg/L) | 트 리클 로로에 틸렌 (mg/L) |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mg/L) |
|----------------------|--------------------|-----------------------------|-----------------------------|----------------------|----------------------|-------------------------------|-----------|-------------------------|----------------------|---------------|-----------------------------|-----------------------------|
| 0.1이 하 | 0.2 이하 | 0.1 이하 | 2 이하 | 3 이하 | 불검출 | 100 이하 | 200 이하 | 50 이하 (95%) | 150 이하 (85%) | 4 이하 | 0.06 이하 | 0.02 이하 |
| 0.5이 하 | 1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0.005 이하 | 3,000 이하 | 300 이하 | 100 이하 (90%) | 200 이하 (80%) | 8 이하 | 0.3 이하 | 0.1 이하 |
| 0.5이 하 | 1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0.005 이하 | 3,000 이하 | 300 이하 | 100 이하 (90%) | 300 이하 (70%) | 8 이하 | 0.3 이하 | 0.1 이하 |

비 고

1.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무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의 합으로 한다.

3.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리터당 1,000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 다)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역)기준항목을 적용하며, 측정 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사용 전보다 사용 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연직차수벽설치 및 오염된 지하수 이송처리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 라)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나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 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은 2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바) 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킴포지트·지오투넷 또는 지오택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또는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쌓거나(이 경우 자루의 내부에는 날카로운 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아니 된다) 폐타이어에 모래·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이 본문의

방법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법이나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매립시설의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

자)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여야 한다.

차)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흠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흠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4)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 차단층 · 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의 비고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나) 차단층: 점토 · 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 · 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다)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킴포지트 · 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라)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카)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 · 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과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해충의 발생 및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을 하여야 한다.

3) 재활용시설의 경우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 바) 소각열회수시설 (생략)

3. 행정처분 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개별기준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
|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5호 | 허가취소 | | | |
| 3)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호 | 허가취소 | | | |
| 4)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 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2호 | | | | |
| 가) 처분 기준 및 방법 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 |
| 나)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다)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1)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라)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마) (생략) | | | | | |
| 바) 그 밖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5)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2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6) (생략) | | | | | |
| 7)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3호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8)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4호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9)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10)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11)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7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12)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8호 | | | | |

| | | | | | |
|---|-------------------|-----------------|-----------------|-----------------|-----------------|
| 가) 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 | | |
|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
|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2)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13) (생략) | | | | | |
| 14)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0호 | | | | |
|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 | | | |
|---|----------------|-------------|-------------|-------------|-------------|
|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15)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6조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2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 | |
| 16)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1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1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2호 | | | | |
|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18)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3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19)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4호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 20)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5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2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6호 | 영업정지 1개월 | | | |

| | | | | | |
|--|----------------|-------------|-------------|-------------|-------------|
| 22)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7호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3호 | 허가취소 | | | |
| 24)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4호 | 허가취소 | | | |
| 25)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8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26)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9호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27)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20호 | 경 고 | 허가취소 | | |

비고

1. (생략)

2.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생략)

4.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 ▶ 「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위 반 행 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가.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 제45조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다.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라.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 | 5천만원 | 1억원 |
| 마.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바.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천만원 | - | - |
| 자.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5.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0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4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일반기준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생략) | | | | |
|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2호 | 30 | 70 | 100 |

| | | | | |
|--|----------------------|-----|-----|-------|
| <p>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 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p> | <p>법 제68조 제1항제1호</p> | | | |
| <p>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p> | | | | |
| <p>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p> | | 300 | 500 | 700 |
| <p>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p> | | 500 | 700 | 1,000 |
| <p>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p> | | 200 | 300 | 500 |
| <p>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p> | | 300 | 500 | 700 |
| <p>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p> | | 300 | 500 | 700 |
| <p>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p> | | 300 | 500 | 700 |
| <p>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p> | | 300 | 500 | 700 |
| <p>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p> | | 200 | 300 | 500 |
| <p>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p> | | | | |
| <p>(1) (생략)</p> | | | | |
| <p>(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p> | | 300 | 500 | 700 |
| <p>(3)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경우</p> | | 400 | 600 | 1,000 |
| <p>(4) (생략)</p> | | | | |

| | | | |
|--|-------|-------|-------|
|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 | | |
|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 200 | 400 | 600 |
|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 400 | 600 | 800 |
| (3) 3개월 이상 초과 시 | 1,000 | 1,000 | 1,000 |
|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1) (생략) | | | |
| (2) (생략) | | | |
|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 200 | 400 | 600 |
| (4) 지정폐기물의 경우 | 500 | 700 | 1,000 |
|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 |
| (1) (생략) | | | |
| (2) (생략) | | | |
|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 200 | 400 | 600 |
| (4) 지정폐기물의 경우 | 300 | 500 | 1,000 |
|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100 | 200 | 300 |
| 마) (생략) | 100 | 200 | 300 |
|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1) (생략) | | | |
|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300 | 500 | 700 |
| (3) 지정폐기물의 경우 | 400 | 600 | 1,000 |

| | | | | |
|--|------------------|-----|-----|-------|
|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 | 500 | 700 | 1,000 |
|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 | 400 | 600 | 800 |
| 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 | | | |
|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 | 500 | 700 | 1,000 |
| (2) 지정폐기물의 경우 | | 500 | 700 | 1,000 |
|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 | | | |
|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 | 500 | 700 | 1,000 |
| (2) 지정폐기물의 경우 | | 500 | 700 | 1,000 |
| 4) (생략) | | | | |
| 라. (생략) | | | | |
| 마. (생략) | | | | |
| 바. (생략) | | | | |
| 사.(생략) | | | | |
| 아.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자.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 300 | 600 | 1,000 |
| 차.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5호 | 100 | 200 | 300 |
| 카.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 | | | |
|--|------------------|-----|-----|-------|
| 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3호 | 100 | 200 | 300 |
| 파.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 50 | 70 | 100 |
| 하.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6호 | 300 | 300 | 300 |
| 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7호 | 100 | 200 | 300 |
| 너.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2호 | 500 | 700 | 1,000 |
| 더.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3호 | | | |
| 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 | 300 | 500 | 700 |
| 2)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 | 500 | 700 | 1,000 |
|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500 | 700 | 1,000 |
|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500 | 700 | 1,000 |

| | | | | |
|---|---------------|-----|-----|-------|
|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300 | 500 | 700 |
|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500 | 700 | 1,000 |
|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 | 500 | 700 | 1,000 |
|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 | | 500 | 700 | 1,000 |
| 5)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 | | | |
| 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 | 300 | 500 | 700 |
| 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 | 500 | 700 | 1,000 |
|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300 | 500 | 1,000 |
| 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5호 | 100 | 100 | 100 |
| 며.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4호 | | | |
|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 | | |
|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 | 200 | 500 | 1,000 |
|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 | 200 | 500 | 1,000 |
|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200 | 500 | 600 |

| | | | | |
|---|---------------|-------|-------|-------|
|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 300 | 500 | 1,000 |
|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 300 | 500 | 1,000 |
|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 | | |
|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 | 700 | 1,000 | 1,000 |
|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 | 400 | 600 | 1,000 |
|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 500 | 700 | 1,000 |
| 4) (생략) | | | | |
|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 300 | 500 | 1,000 |
|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 | 300 | 500 | 1,000 |
|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 1,000 | 1,000 | 1,000 |
| 버.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5호 | 300 | 500 | 1,000 |
| 서.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6호 | 50 | 70 | 100 |
| 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7호 | 100 | 100 | 100 |
| 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9호 | | | |
|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 | 300 | 300 | 300 |
|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 100 | 200 | 300 |

| | | | | |
|---|------------------|-------|-------|-------|
| 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8조 제3항제8호 | 50 | 70 | 100 |
| 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 100 | 200 | 300 |
| 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6호 | 300 | 600 | 1,000 |
| 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9호 | 50 | 70 | 100 |
| 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 50 | 70 | 100 |
| 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 100 | 100 | 100 |
| 노.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 1,000 | 1,000 | 1,000 |
| 도.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 300 | 300 | 300 |
| 로.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8호 | 1,000 | 1,000 | 1,000 |
| 모.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 100 | 100 | 100 |
| 보.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 100 | 100 | 100 |
| 소. (생략) | | | | |
| 오. (생략) | | | | |
| 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 100 | 100 | 100 |